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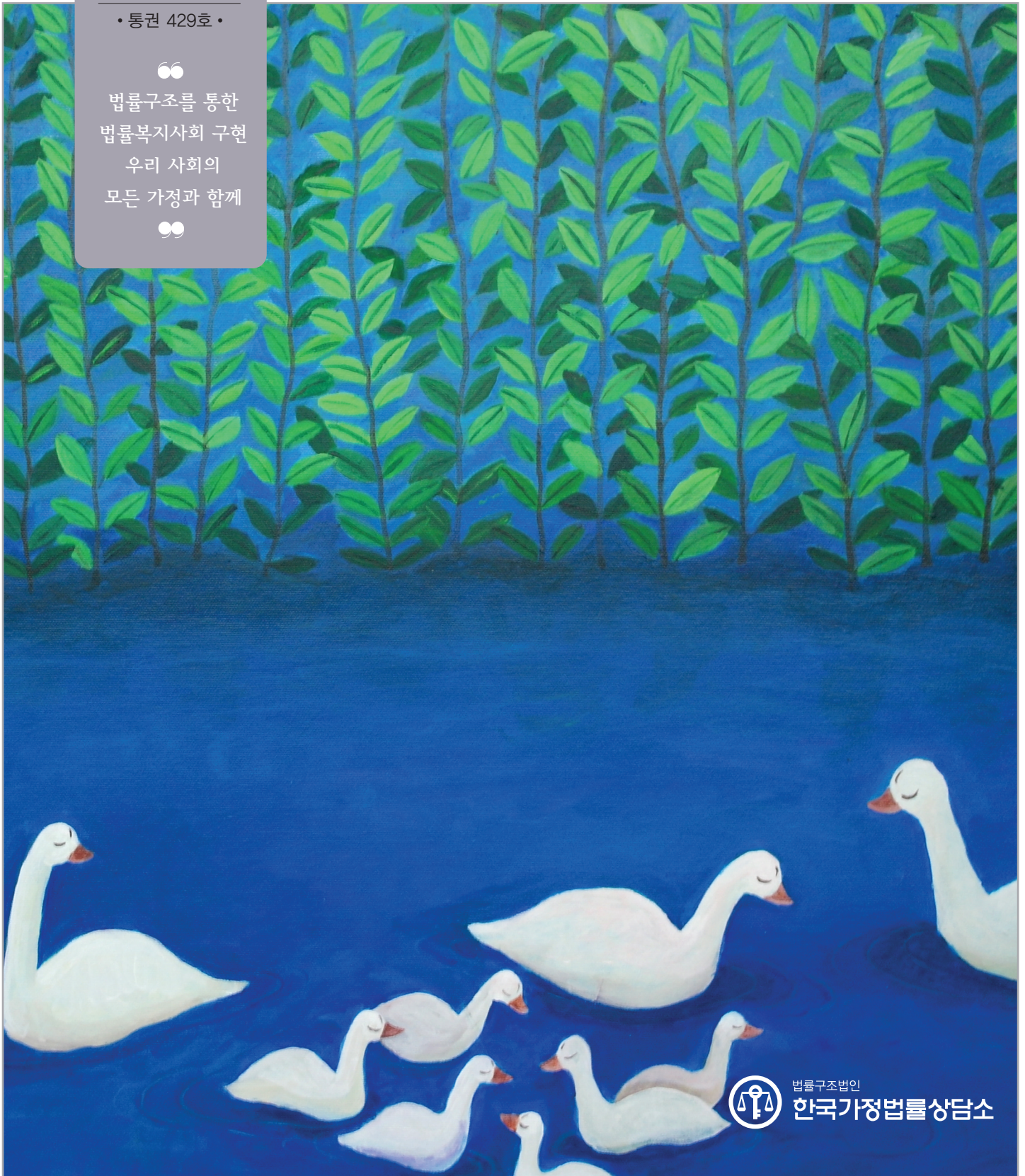
5

2019

• 통권 429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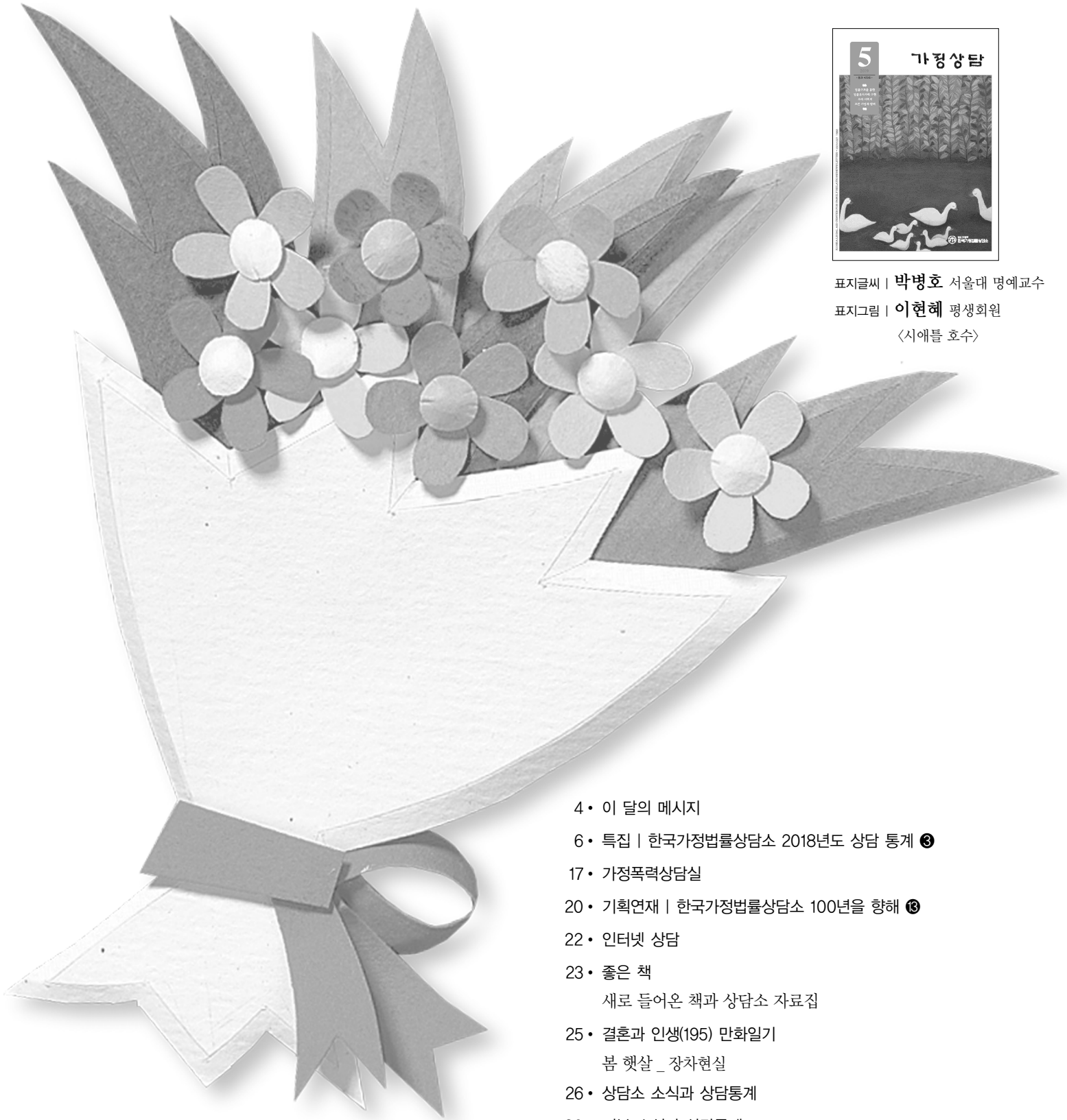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 본소에서는 법의 생활화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 중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 기사 26면)



△ 4월 22일 본소 대강의실에서 '국제가족관계등록 실무'를 주제로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관련 기사 26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시애틀 호수〉

- 4 • 이 달의 메시지
- 6 •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도 상담 통계 ❸
- 17 • 가정폭력상담실
- 20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❸
- 22 • 인터넷 상담
- 23 • 좋은 책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 25 • 결혼과 인생(195) 만화일기
봄 햇살 _ 장차현실
- 26 •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 30 •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 32 •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가정의 달을 맞아, 급변하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급격한 변화’, ‘역동적인 사회’ 또는 ‘다이나믹 코리아’, 모두 우리 사회를 수식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 그리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변화를 지극히 단기간에 경험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가족의 형성과 정체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왔으며, 구성원들의 의식구조 역시 이에 따라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담소에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가정의 변화는 높은 이혼율,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이혼율이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낮은 혼인율에 기인할 것으로 이는 2017년 1.05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산율 그리고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는 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연동하여 인구문제 및 가정문제까지 커다란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두 세대 전만 하더라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며 가족계획을 홍보하던 우리 사회가 이제는 자녀 출산이 곧 애국인 시대가 되었으니 이렇듯 짧은 시기에 경험하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진정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담소의 2008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이혼상담의 경우 여성은 40대, 남성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50대 남녀의 상담 비율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2018년도 상담소의 통계는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년 이혼상담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1배, 남성은 2.9배 증가하였으며, 20년 전에 비하면 여성은 8.7배, 남성은 7.9배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상담이 여성은 40대에서 가장 많고 남성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한 최고령자를 살펴보면 여성은 88세, 남성은 90세였습니다. 노년이혼이 사회적 화제가 되면서 ‘해로하시라’는 판결에 대해 비난이 쏟아졌던 것이 불과 십여 년 전의 일인데 현재 상황은 우리 사회 가정문제가 어떠한 내용과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가정의 변화, 가족구성원들의 삶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려스럽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 또한 큰 문제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새로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사회전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청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단편적으로 매몰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문화가정 관련이나 미투 운동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안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으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보다 특정 주제가 부각될 때 예산과 정책 등이 모두 그것에만 집중되면서 이벤트화 되는 경향이 없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인가구가 급증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다양한 형태와 생각지도 못한 양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모습으로든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정은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앞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가정문제 전반에 대해 더 진지한 노력과 반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가정의 문제는 곧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 사회 가정문제는 사회 전체의 재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신의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가정의 달입니다.

특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도 상담 통계 ③ | 다문화 가정

본소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70.7%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담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 남편

- 나만 보면 돈 달라는 외국인 아내, 내가 은행인가요?

- 외국인 아내가 돈과 전혼자녀에 대한 입양을 요구하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인 남성)

2년 전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였다. 나는 초혼이고 상대는 재혼이다. 내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어 경제적으로 쪼들렸는데 상대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태도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전혼자녀(여, 8세)를 입양해달라고 하였다. 상대는 나를 남편으로 보지 않고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은행, 자신의 아이를 입양해 줘야 하는 사람으로만 보는 것 같았다. 상대와 결혼하는 데에만 3,000만원 이상 들어갔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급기야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다. 이혼하는 방법은?

외국인 아내

- 외국에서 온 것이 죄인가요? 특하면 한국인 남편이 본국으로 쫓아내겠다고 협박해!

- 남편의 무시, 모욕, 협박, 폭력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10년 전 한국에 왔다. 남편과 나 모두 재혼이다. 남편은 내가 머리 감거나 빨래하는 모습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았다. 말대꾸하면 주먹부터 날라 왔고 신고하면 내가 한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였다. 과거에도 다른 외국 여자를 본국으로 쫓아냈다고 한다. 외국에서 온 것이 죄냐고 했더니 남편은 죄라고 하였다.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집을 나왔다. 이혼 후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한국인 아내

- 외국인 남편이 국적 속여 교제, 나 이용해 한국 입국 후 잠적!

- 남편이 국적 속인 후 입국해 잠적한 사례 (내담자 30대 한국인 여성)

여행 중에 상대를 처음 만났다. 상대는 두바이 사람이라고 했고 태국과 라오스 등지에 부동산이 많다고 하였다. 가까워지자 결혼을 재촉했는데 막상 서류를 받으니까 파키스탄 사람이었다. 살면서 보니 국적만 속인 것이 아니었다. 돈도 전혀 없었고, 생활도 엉망이었다. 다툼이 커지자 상대는 집을 나가 잠적하였는데 출국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나를 이용했던 것 같다.

외국인 남편

- 다들 때마다 비자문제를 이유로 경찰 부르겠다고 협박해!

- 체류문제를 이유로 협박 일삼는 아내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50대 나이지리아 남성)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2016년 혼인하였다. 아내는 싸울 때마다 비자문제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하였다. 한 번도 폭행한 적이 없는데 몰래 녹음하면서 내가 가정폭력을 한 것처럼 꾸민 후 경찰을 불렀고 겁이 나 외국인 쉼터로 피해 나왔다. 평소에도 아내는 수시로 나를 내쫓으려고 했다.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 이러다가 강제 출국을 당할까 걱정이 된다.

2018년 한 해 동안 상담소 본부에서 진행된 다문화가정 상담 총 건수는 1,018건이었다. 그 중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817건(80.3%),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01건(19.7%)이었다¹⁾.

상담 건수, 실제 이혼 건수의 70.7%에 달해

2019년 3월 20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다문화가정의 이혼 건수는 총 7,140건이었고, 그 중 서울지역 이혼 건수는 1,439건이었다. 본 상담소 서울 본부의 다문화가정 상담 건수는 1,018건으로 서울지역 실제 이혼 건수의 약 70.7%에 달해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상당수가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부부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고,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이혼 방식이나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 또한 이혼에 수반되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문의하였다. 한편, 혼인신고는 하

였으나 실제 혼인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혼인 사실 자체를 없애고자 혼인무효나 취소 절차를 우선해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혼인이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을 시에는 이혼으로라도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주위적으로는 혼인무효나 취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청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상담

주요 발견 사항

- 상담소 찾는 한국인 남편 비율 10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2008년 27.2%→2018년 68.4%)
- 외국인 아내 방문 31.6%, 한국인 남편 방문 68.4%
-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외국인 아내의 상담보다 2.2배 더 많아
- 한국인 남편은 50대, 외국인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아
- 한국인 남편이 17세~30세 이상 연상 23.3% (일반가정 이혼상담 4.2%)
- 한국인 남편이 외국인 아내보다 교육정도 낮아 (한국인 남편의 21.5%, 외국인 아내의 16.9% 중졸 이하)
- 재혼 비율 44.9%(일반가정 이혼상담 13.4%)
- 한국인 남편의 67.7%, 외국인 아내의 92.2% 보유재산 없어 매우 빈곤
- 혼인신고 후 30.5% 별거 중
- 한국인 남편은 자신의 폭력, 장기별거, 아내의 가출 순으로 상담
-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 폭언, 외도 순으로 상담

1) 결혼이민자들 중에는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도 있으나 분석의 편의상 본국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으로 표기함.

혼인 성립 시부터 일반가정에 비해 갈등 유발 요인 더 많아

아내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은 혼인 성립 시부터 갈등 유발 요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본 상담소에 이혼상담을 받으러 온 일반가정과 비교해보면, 연령면에서 일반가정은 남편이 3~4년 연상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이 17~30년 연상이 가장 많아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 간 연령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남편이 17~30년 연상, 일반가정 4.2% / 다문화가정 23.3%). 혼인형태면에서도 재혼비율이 일반가정은 13.4%였으나 다문화가정은 44.9%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재혼 비율이 3.4배 가량 높았다. 교육정도면에서도 중졸 이하의 비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더 높았고, 한국인 남편이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중졸 이하, 일반가정 남편 14.0%, 아내 13.9% /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 21.5%, 외국인 아내 16.9%). 각각의 인적 특성과 상담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I. 내담자 및 상대자 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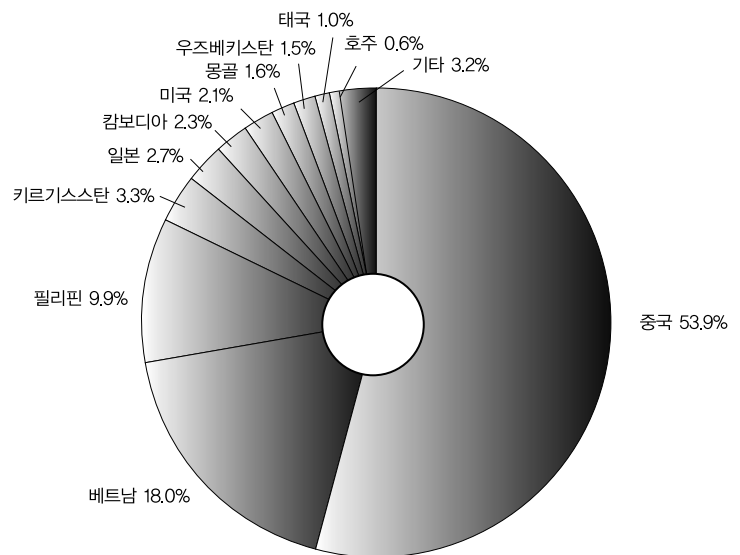
외국인 아내 31.6%, 한국인 남편 68.4%
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계속 증가해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상담 817건 중 외국인 아내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258건(31.6%), 한국인 남편이 방문한 건수는 559건(68.4%)으로 나타나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의 상담이 2.2배 많았다. 다문화가정 상담에 관해 처음 분석을 시작한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모두 한국인 남편보다 외국인 아내의 상담이 더 많았다(한국인 남편의 상담 비율 2006년 14.0%, 2008년 27.2%, 2009년 36.1%, 2010년 29.4%, 2011년 37.5%, 2012년 40.9%, 2007년에는 분석하지 않음). 그런데 2013년부터는 외국인 아내보다 한국인 남편이 더 많이 상담소를 찾았고(한국인 남편 상담 비율 2013년 51.9%, 2014년 51.0%, 2015년

63.2%, 2016년 64.1%, 2017년 65.2%, 2018년 68.4%), 2014년부터는 상담소를 찾는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계속 증가해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한국인 남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순으로 많아

외국인 아내의 본국은 총 817명 중 중국이 440명(53.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베트남 147명(18.0%), 필리핀 81명(9.9%), 키르기스스탄 27명(3.3%), 일본 22명(2.7%), 캄보디아 19명(2.3%), 미국 17명(2.1%), 몽골 13명(1.6%), 우즈베키스탄 12명(1.5%)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은 50대,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고 남편이 연상인 경우 17~30살 차이가 23.3%에 달해

외국인 아내의 연령은 30대 321명(39.3%), 50대 188명(23.0%), 40대 163명(19.9%), 20대 92명(11.3%) 순으로, 한국인 남편의 연령은 50대 286명(35.0%), 40대 277명(33.9%), 60대 이상 186명(22.8%), 30대 43명(5.3%) 순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나이 차이를 살펴보면, 부부의 나이가 같은 경우는 36명(4.4%),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687명(84.1%), 아내가 연상인 경우는 54명(6.6%), 미상인 경우는 40명(4.9%)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연상인 경우는 17~30년 차이가 160명(23.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1~12년 116명(16.9%), 13~14년 101명(14.7%), 7~8년 69명(10.0%), 3~4년 66명(9.6%), 15~16년 52명(7.6%), 9~10년 43명(6.3%), 5~6년 35명(5.1%), 31년 이상 29명(4.2%), 1~2년 16명(2.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이 연상인 경우는 1~2년 차이가 37명(68.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1~12년 7명(13.0%), 3~4년 · 9 · 10년 각 4명(각 7.4%), 5 · 6년 2명(3.7%) 순으로 나타났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30대 캄보디아 여성)

나는 23살에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왔고 남편과는 27살 차이가 난다. 남편은 돈 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굴었다. 아이 양육을 도와줄 겸 잠시 한국에 온 내 친정부모에게도 생활비를 내라고 강요할 정도였다. 친정 부모님이 남편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친정 부모님도 무시·모욕하였다. 그리고 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견디기 힘들어 혼자 집을 나와 지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나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다. 나는 한국어가 서툴러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으나 통역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혼하고 내가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고 싶다.

●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남편과 31살 차이가 난다. 남편과 나 모두 재혼으로 만

났는데 남편은 혼인 후에도 계속 전부인을 만났다. 못 만나게 하면 나를 폭행하였다. 남편은 전부인과 일주일씩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그럴 때면 집 안에 있는 밥통과 쌀까지 모두 가지고 나갔다. 남편은 내게 늘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폭발해 나를 심하게 폭행하였다. 폭행 때문에 내가 응급실에 실려 간 적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혼하고 양육비를 받았으면 한다.

외국인 아내에 비해 교육정도 낮은 한국인 남편 많아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모두 고졸[아내 37.9%(310명), 남편 39.8%(325명)]이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육정도가 낮은 초졸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2.5%(20명)이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6.2%(51명)이었고,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무학의 경우 외국인 아내는 없었으나 한국인 남편은 0.4%(3명)로 나타났다. 또한, 중졸 이하의 비율이 일반가정에 비해 더 높았고, 한국인 남편의 비율이 외국인 아내의 비율보다 더 높았다(중졸 이하, 일반가정 남편 14.0%, 아내 13.9% / 다문화가정 한국인 남편 21.5%, 외국인 아내 16.9%).

●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40대 몽골 여성)

나는 몽골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혼인하였다. 남편은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살면서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은 그 말을 담아뒀다가 자신을 무시하느냐며 술을 잔뜩 마신 후 폭력을 행사했다. 갈비뼈가 골절되어 치료받은 적도 있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여러 번 있다. 남편은 매일 소주 한 병을 마셨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 둔 후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다. 딸이 두 명 있는데 아이들도 아빠를 너무 무서워한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 학력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친구 소개로 한족인 중국인 여성을 만나 5년 전 재혼하였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내 조건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밝혔다. 그런데도 상대 여성은 내가 좋라며 혼인신고를 해 주면 같이 살겠다고 하였다. 상대는 중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 나보다 나이도 10살이나 어렸다. 혼인신고 후 실제로 같이 살았다. 그런데 3일 만에 중국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전화번호도 모르고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소개해 준 친구도 중국에 오가며 조금 아는 사이일 뿐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하였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정리할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살았다.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니 배우자가 있어서 어렵다고 한다. 이 혼하는 방법은?

부부 모두 보유재산 없고 월수입 낮아 경제적 빈곤 심각

외국인 아내는 주부(201명, 24.6%), 한국인 남편은 무직(185명, 22.7%)이 가장 많았다. 특히 주부와 무직, 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한 단순노무, 미상을 합한 비율이 외국인 아내는 71.6%, 한국인 남편은 49.0%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아내의 92.2%(753명)와 한국인 남편의 67.7%(553명)가 보유재산이 없거나 미상이며, 외국인 아내의 76.6%(626명), 한국인 남편의 50.3%(411명)가 수입이 없거나 미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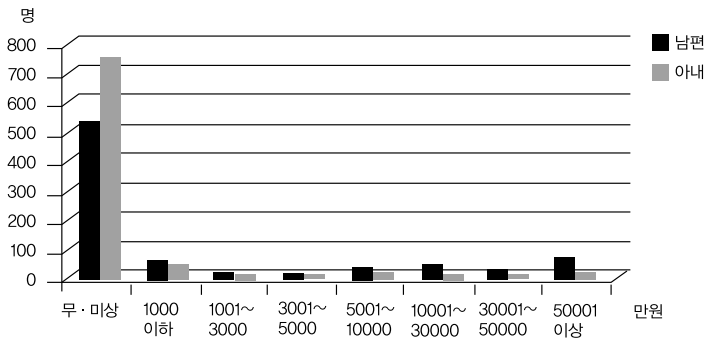
(내담자 20대 베트남 여성)

나는 베트남에서 왔고 한국인 남편을 만나 20세에 아이를 낳았다. 남편과 17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남편이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다. 남편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을 안 나가는 날이 더 많다. 결혼 초에는 남편이 월세와 공과금은 주었으나 지금은 그 돈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내가 부업을 해서 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 게다가 남편은 다투기만 하면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한다. 남편이 무섭다. 지난주에도 빨래 문제로 다투다 남편이 물건을 내게 던졌다. 아이를 데리고 잠시 나갔다 들어왔더니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였다. 아이가 너무 추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센터에서 하룻밤을 잤다. 남편은 아이 양육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월세 보증금 30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이혼하고 내가 아이를 키웠으면 한다. 양육비도 받고 싶은데 방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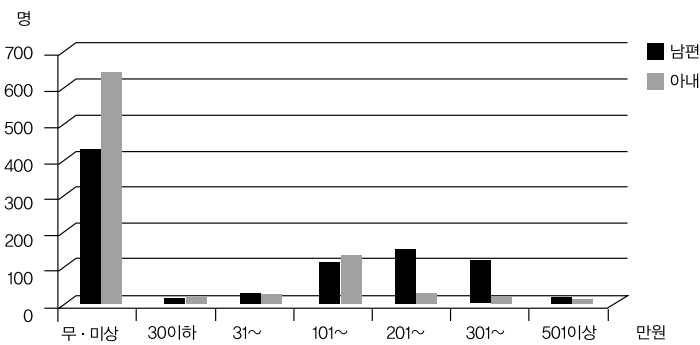
●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외국인 아내가 입국을 거부한 상담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10년 전 지인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받았다. 당시 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척 잘 되었다. 내가 계속 필리핀을 다니며 그 여성을 만났다. 혼인하기로 하고 나 혼자 돌아와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설득했지만 상대는 한국에 올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는 일이기에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흘러버렸다. 나는 현재 신용불량자이고 몸도 좋지 않아 수입도 없는 상태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며칠 전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확인하다 내가 그 여성과 혼인한 상태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었는데 이혼하는 방법은?

●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재산보유액별 ●



●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월수입별 ●



다문화가정 상담 재혼 비율 44.9%,
일반 이혼상담보다 재혼 비율 높아

혼인형태의 경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26.9%(220명)로 가장 많았고, 남성 재혼-여성 초혼인 경우는 16.0%(131명), 남성 초혼-여성 재혼인 경우는 5.3%(43명),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는 23.6%(193명), 미상 28.2%(230명)로 나타났다. 재혼가정 비율이 44.9%로 전체 이혼상담에서 재혼가정의 비율(1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사이에 미성년 친자가 있는 경우는 46.9%(383명)이었으며, 한국인 남편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7.6%(62명), 외국인 아내에게 미성년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는 5.9%(48명)로 나타났다.

여성이 재혼인 경우는 28.9%(236명)[남성 초혼-여성 재혼(5.3%, 43명), 남성 재혼-여성 재혼(23.6%, 193명)]이었고, 재혼한 아내에게 전부소생 자녀가 있는 경우는 5.9%(48명)이었다. 외국인 아내가 본국에 전부소생 자녀를 두고 왔을 때에는 생활비를 보내는 문제와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문제, 입양했을 때에는 양육비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남편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혼자녀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30대 베트남 여성)

나는 7년 전 베트남에서 왔다. 남편과 나 모두 재혼이었다. 남편이 내 전혼자녀(남, 14세)를 입양해 아이와 함께 살았다. 그런데 입양만 했을 뿐 생활비를 지급한 적도 없고, 입양을 이유로 계속 나에게 돈을 요구하였다.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아이에게도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다. 경찰에 수 차례 신고하였고 현재는 남편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다. 더 이상은 이대로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 아내의 전혼자녀 입양 후 아내가 가출한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한족인 중국인 여성과 6년 전 재혼하였다. 상대가 중국에 두고 온 전혼자녀(남, 12세)를 늘 걱정하였고, 내게 입양해 줄 것은 간곡히 부탁해 3년 전 그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해 같이 살았다. 그런데 아이가 한국에 오자 갈등이 심해졌다. 아이는 막무가내였고 상대도 아이만 감싸고 돌았다. 나도 아이에게 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자신들만 밥을 챙겨 먹고 나는 한 집에서도 모른 척 지냈다. 급기야 1년 전 상대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후 연락을 끊었다. 화가 나 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아이에 대한 파양절차도 진행하고 싶다.

전체의 30.5%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나

결혼 기간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은 2.6%(21명), 1년 이상~2년 미만은 3.2%(26명), 2년 이상~3년 미만은 3.3%(27명), 3년 이상~5년 미만은 3.9%(32명), 5년 이상~10년 미만은 12.4%(101명), 10년 이상은 52.7%(431명)로 나타났다.

한편,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 전체의 30.5%(249명)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거 기간은 5년 이상~10년 미만인 경우가 31.7%(79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10년 이상 20.5%(51명), 1년 미만 19.7%(49명), 1년 이상~2년 미만 14.5%(36명), 2년 이상~3년 미만 7.6%(19명), 3년 이상~5년 미만 6.0%(15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적취득(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고 체류연장을 위해서는 신원보증인인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총 47명이었고, 그들 중 이미 별거 중인 사람들이 27명에 달했다. 즉, 결혼기간 2년 미만인 사람들 중 이미 별거하고 있는 경우가 57.4%이고 이 경우 외국인 아내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인 사람들은 총 591명이었고 이 경우에도 이미 별거 중인 사람이 222명으로 나타나 별거 비율이 37.6%에 달하였다. 국적취득에 있어서 결혼기간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별거 시에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 남편에게 최소한의 협조도 받지 못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해왔다. 또한, 이혼을 원하더라도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별거에 이르러 소송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외도와 별거로 귀화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 (내담자 50대 중국 여성)

결혼한 지 3년 지났다. 그런데 남편이 1년 전부터 외도를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현재 귀화 신청 중인데 남편의 진술이 하나의 요건이다. 남편은 내가 연락하면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외도하고 있는 남편이 내가 귀화할 수 있도록 진술해 줄 것 같지가 않다.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내가 귀화도 하고 계속 체류하려면 남편이 잘못해서 이혼했다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아내가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해온 사례 (내담자 40대 한국 남성)

지인을 통해 베트남에 있는 아내를 소개받았다. 처음에는 SNS로만 연락하였는데 갑자기 아내가 혼인을 서둘러 급하게 베트남에 가서 혼인을 하고 왔다. 베트남에 잠시 있는 동안 아내는 이상하게 내 눈치를 계속 봤고, 거짓말도 자주 했다. 이후 아내가 한국에 왔는데 입국 후에도 이상한 눈치였다. 결국 한국에 온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가출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어떤 센터를 통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왔다. 아내는 한국에 오기 전 내게 귀금속 등 금전을 계속 요구하였고 결혼 비용도 많이 들어가 부담이 컸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애시당초 나와 같이 살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5년 간 국제결혼도 불가하다는데 재산적 피해 외 정신적 피해도 너무 크다.

II. 상담 사유 분석

외국인 아내는 기타사유, 한국인 남편의 폭력,
외도 순으로 상담

한국인 남편은 기타사유 · 자신의 폭력,
외국인 아내의 가출 순으로 상담

외국인 아내의 상담 사유(총 258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폭언, 성격차이, 경제갈등, 알콜중독, 의처증 · 장기별거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27.9%, 72명)

2위 '남편의 폭력' (3호)(27.5%, 71명)

3위 '남편의 외도' (1호)(7.4%, 19명)

한국인 남편의 상담 사유(총 559명)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불신,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성격차이, 전과/복역 · 애정상실 등이 우선 순위임)' (6호)(35.1%, 196명)

2위 '자신이 아내 폭행' (내담자 3호)(35.1%, 196명)

3위 '아내의 가출' (2호)(12.3%, 69명)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

외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27.9%(7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호 '남편의 폭력' 27.5%(71명), 1호 '남편의 외도' 7.4%(1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8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여성 내담자(3,288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 빚, 알콜중독 순 44.7%, 1,470명), 3호(남편의 폭력 27.8%, 912명), 1호(남편의 외도 15.8%, 519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사유 순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외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72명 중 '폭언'이 36.1%(2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23.6%(17명), '경제갈등' 6.9%(5명), '알콜중독' 5.5%(4명), '의처증' · 장기별거 '각 4.2%(각 3명)', '배우자의 이혼강요' 2.8%(2명), '생활무능력' · '도박' · '전과/복역' · '무시/모욕' · '시가와의 갈등' 각 1.4%(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사유 항목을 묶지 않고 단일 사유만 고려하면 외국인 아내들은 남편의 폭력(27.5%)을 사유로 가장 많이 제시하였다. 또한, 외국인 아내가 제시한 6호 기타사유 중에서도 폭언이 가장 많아 다문화가정에서 외국인 아내들이 여전히 한국인 남편의 폭력 때문에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인 남편의 외도, 생활무능력 사례 (내담자 30대 중국 여성)

나는 중국국적을 가졌다. 한국인 남편과 혼인해 8년 전 한국에 왔다. 나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다. 남편은 무능력하고 파산을 신청한 상태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편은 다른 중국여성과 외도 중이다. 남편은 초혼에서 낳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상태이고, 나와 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도 내가 돌보지 않으면 고아원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혼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폭언 사례

(내담자 40대 중국 여성)

나는 중국에서 왔고 혼인한 지는 16년 지났다.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하고자 한다. 남편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수시로 폭행하였다. 몇 년 전 참다못해 내가 이혼소장을 접수시켰는데 남편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해 취하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폭행이 시작되었다. 두 달 전에는 나를 동네 뒷산에 끌고가 폭행하였고, 나는 택시를 타고 겨우 도망쳤다. 이혼 후 아이들을 내가 키웠으면 한다.

● 한국인 남편의 폭력, 불성실한 생활, 외도 사례

(내담자 30대 볼리비아 여성)

남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생활이 방탕하다. 매우 폭력적이어서 조금이라도 화가 나면 나를 때렸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밖에 나가 숨은 적인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아들은 때리면서 키우는게 한국 문화라며 이제 4살 밖에 안 된 아이를 수도 없이 때렸다. 아이도 아빠 목소리만 들으면 덜덜 떨었고 아빠 목소리에 질려 몸이 마비가 된 적도 있다. 한번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와 나갔다가 다음날 저녁에 들어왔더니 필리핀 여성 마사지사 와 집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같이 살 수 없어 이혼하고 싶다.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

한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와 내담자 3호 '자신이 아내 폭행'이 동일하게 각 35.1%(각 196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아내의 가출' 12.3%(6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96명 중 '장기별거'가 61.7%(12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불신' 10.2%(20명),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6.1%(12명), '성격차이' 4.6%(9명), '전과/복역' · '애정상실' 각 2.6%(각 5명), '거짓말' · '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2.0%(각 4명), '경제갈등' · '불성실한 생활' · '혼전성관계' · '알콜중독' · '폭언' · '기물파손' · '잡은 가출' · '자녀양육갈등' 각 0.5%(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남편들 중 35.1%는 자신이 외국인 아내를 폭행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상담해 왔다. 6호 기타사유 항목을 묶지 않고 단일 사유만 고려한다면 아내를 폭행했다는 사유가 한국인 남편들이 제시한 상담 사유 중 가장 많아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이 주된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한국인 남편들은 자신의 폭력 이전에 아내의 외도나 가출, 불성실한 생활 등이 지속되어 왔다고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아내의 유책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

한편, 본 상담소의 2018년도 전체 이혼상담에서 남성 내담자(1,365명)가 제시한 사유는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 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폭언, 정신병 순 60.6%, 827명), 2호(아내의 가출 16.8%, 230명), 3호(아내의 폭력 13.1%, 179명)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차이를 보였다.

일반 이혼상담과는 다르게 다문화가정 상담에서는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에 대한 자신의 폭력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상담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체류 또는 국적 문제 등을 이유로 외국인 아내들이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해 올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아내의 외도, 자신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상담한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중국인 아내와 혼인하였다. 아내는 과거에 사귀었던 중국 남자를 한국에서도 계속 만나왔다. 심지어 그 남자가 나를 찾아오기도 하였다.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내게 말을 안했다고 하였는데 그 남자의 얘기는 달랐다. 아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려 했으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어 잘 되지 않았다. 결국 아내와 다투다가 아내를 폭행하게 되었다. 아내는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가사일에도 소홀하였다.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어 이혼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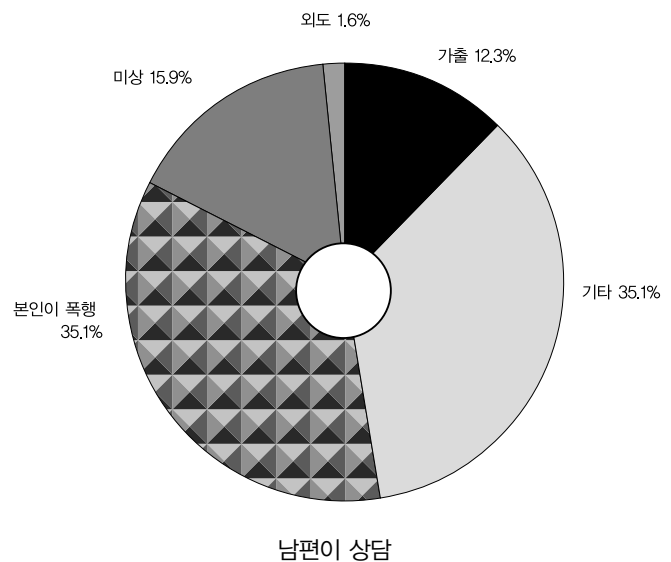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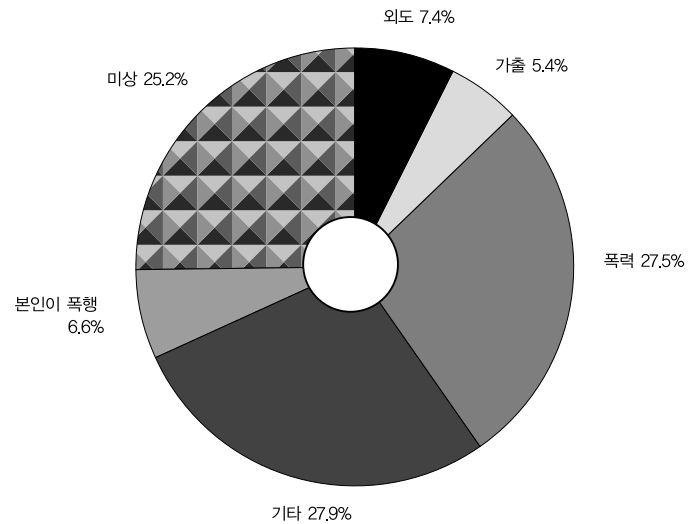
● 아내의 거짓말, 생활양식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는 사례 (내담자 60대 한국 남성)

중개업소를 통해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다. 그런데 아내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아이도 돌보지 않았다. 아이에게도 소리만 지르고 잘 챙겨주지 않아 아이도 엄마를 멀리 하였다. 아내는 혼인 초부터 베트남 친정에 꽤 큰 돈을 계속 송금하였다. 혼인 당시 나는 아내가 초혼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베트남에 전부소생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원을 줬는데 공과금이나 사소한 식비조차 하나도 내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는 나와 상의도 없이 식당에 일을 다니고 있다. 밖에서는 매우 조신한 척하고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하여 나와 아이에게 소리를 지른다. 더 이상은 이런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

● 아내가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해 온 사례 (내담자 50대 한국 남성)

베트남 여성과 4년 전 혼인하였다. 나는 50대이고 아내는 20대이다. 살면서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어머니 집으로 옮기게 되었고, 수입과 재산이 전혀 없었다. 2년 전 아내가 다른 베트남 남성을 만나러 다니더니 집을 나가

버렸다. 그래도 나는 계속 아내를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이혼할 의사가 없지만 그래도 이혼으로 가게 된다면 내 잘못이 아닌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기재되었으면 한다.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 상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다문화가정 상담(총 1,018건) 중 19.7%(201건)를 차지하였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외국인 남편의 상담보다

3.7배 많아

외국인 남편과 한국인 아내의 상담 201건 중 외국인 남편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건수는 43건(21.4%), 한국인 아내가 방문한 건수는 158건(78.6%)으로 나타나 외국인 남편보다 한국인 아내의 상담이 3.7배 더 많았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순

그 외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이집트, 영국,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태국, 레바논, 파키스탄, 케냐, 세네갈 등 다양해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총 201명 중 중국이 89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국 41명(20.4%), 일본 24명(11.9%), 인도 6명(3.0%), 나이지리아 5명(2.5%), 우즈베키스탄·호주·이집트 각 4명(각 2.0%), 영국 3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남편의 본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그 다음 순위가 베트남, 필리핀이었던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미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남편의 본국은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이집트, 영국, 이탈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태국, 레바논, 파키스탄, 케냐, 세네갈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아내가 한국인과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본국보다 여건이 나은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나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남편의 본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남편의 본국이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제적

사정이 비교적 나은 경우에는 한국인 아내가 혼인신고 후 남편의 본국으로 출국을 원하였으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출국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한편, 인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아프리카나 동남아인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들이 한국에서 기술 등을 습득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였으나 한국인 아내와 갈등이 있어 체류 등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입국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인 여성과 혼인해 이혼에 대한 법적인 정리 절차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남편 - 자신이 아내 폭행 후 체류 자격 등 문의

한국인 아내 - 장기별거, 남편 가출, 남편 폭력 호소

상담 사유를 살펴보면, 외국인 남편이 상담한 경우에는 내담자 3호 '자신이 아내 폭행'이 48.8%(21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7.2%(16명), 2호 '아내의 가출' 4.7%(2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통해 보면, 외국인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폭행해 이혼위기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외국인 남편은 한국인 아내가 자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올 경우 자신의 한국 내 체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하였다. 한편, 외국인 남편들이 두 번째로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16명 중 '폭언'이 31.3%(5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배우자의 이혼강요' 각 18.8%(각 3명), '장기별거' 12.5%(2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가 상담한 경우에는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53.2%(84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2호 '남편의 가출' 13.3%(21명), 3호 '남편의 폭력' 12.7%(20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아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한 6호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84명 중 '장기별거'가 69.0%(58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성격차이' 15.5%(13명), '경제갈등' 3.6%(3명), '전과/복역' 2.4%(2명) 순으로 나타났다.

김진영 상담위원

가정 폭력 상담실

행위자 상담



음주 상태의 잘못된 대화 요청은 주사일 뿐, 가족 관계에서 올바른 대화법 찾아야

사건번호 2017버1*** 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음주문제상담 2회, 교육강좌 4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1. 24. ~ 2018. 5. 18.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와 결혼한 지 2년 6개월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3세)가 있다. 부부는 본 건 이전에 상호간 폭력으로 40시간 수강명령 보호처분을 받고 지정된 수탁기관에서 1일에 5시간씩 8일간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다. 그 때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으며 화났을 때 오는 몸의 신호, 원가족의 영향, 자신의 모습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인식하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좋아졌지만 교육이 끝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은 불안감을 가졌다고 하는데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

본 사건은 2017년 4월 사건당일,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더 놀고 가자는 것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 행위자가

술에 취해 귀가 후 거실에 있던 머그컵을 싱크대에 던져 깨트리고 딸의 장난감을 주먹으로 치고 던지는 재물손괴를 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된 것이다.

행위자는 갈등 및 폭력원인으로 피해자와의 성격차이 및 본인의 음주문제를 꼽았다. 사건 이후 절주를 실천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상담기간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행위자는 수립한 계획대로 상담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의 의식과 태도에서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이전에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만 생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의식의 깨침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이 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전에는 본인 위주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고 '가사는 내 일이다'고 생각하며 가사에 임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변화에 대하여 '잘해준다. 술을 마셔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마실 때에도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는데 이제는 나에게 물어보고 마신다'고 보고하였다. 또 가사도 잘해주고 아이 목욕도 도맡아하는 등 자녀 양육도 함께 한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부부싸움은 1회 있었지만 폭력은 없었다. 이전의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0점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8점 정도 된다고 하면서 부부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7버1***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부모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들) 전화상담 1회
등 총 18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2. 1. ~ 2018. 5. 3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2017년 9월 사
건당일,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인 아들이 대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폭력을 행사 하여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의 폭행으로 부서진 선풍기의 파편에
피해자는 손가락을 다쳤다.

초상담시 행위자는 피해자가 직장에 다닌다고 하지만 어
딘지도 모르고, 집에는 한 푼도 내놓지 않으면서 카드빚을
쓰고 갚지 못해 행위자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게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였다. 아
내는 아들이 건강하여 돈을 쓰고 다니는 것이니 다행으로
생각하라 하였지만 행위자의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성인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가해자인 행위자에
게 특히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도록 하여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돕고자 하였다.

상담을 받은 후 행위자는 피해자를 괴롭히게 생각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하였고 자신이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의 생
각은 과거 시대의 고정관념에 따른 것으로 변화된 사회에
서는 통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변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
다. 한편 피해자의 경제적 문제는 여전한데 이러한 문제가
행위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정의 문제라 생각
하게 되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리
고 피해자를 이기려 하기 보다는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

게 되었다. 행위자는 상담기간 중에도 피해자와 대화는 거
의 하지 않았지만 충돌은 없었고 피해자가 가끔 미안한 표
정을 보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상담 이전의 부자관계
를 10점 만점에 0점으로 지금은 5점으로 평가하여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
다고 하였다. 또한 이전에는 행위자가 주관적인 생각이 강
했다면 지금은 많이 유연해졌고 자식의 입장에서 생각하려
는 태도가 보인다고 그 변화를 인정하였다. 이전의 부자관
계를 10점 만점에 3점으로 지금의 관계는 8점 이상이라고
평가하여 매우 긍정적인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사건번호 2017버1*** 특수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4회, 부모집단상담 8회,
피해자(딸) 전화상담 3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2. 1. ~ 2018. 5. 3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의 아버지이고, 부녀 모두 직장에 다닌
다. 11년 전 아들(피해자의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는 장애를 갖게 되어 주간에는 요양보호사의
보살핌을 받고 야간에는 행위자와 아내가 돌보고 있다. 행
위자 부부는 아들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
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

행위자는 2017. 9. 사건 당일, 엄마와 다툰 피해자가 카
톡에 그냥두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무슨 말
이냐고 따지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아령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며 협박하여 서울가정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음주 후 가족들에게 하는 대화요청을 피해자와 가족들이 주사로 생각하는 것을 갈등원인으로 꼽았으며 상담 초기에 아내와 피해자에게 향후 주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하고 상담자에게도 실천을 약속하였다.

피해자는 상담기간 중 상담자에게 행위자의 개선 또는 퇴보 등을 보고하면서 행위자 변화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였다.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행위자가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이었다. 동생 사고가 11년 전 일 어났는데 사고 후 2~3년간은 괜찮았지만 이후 1년에 한 두 번 씩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행위자의 행동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상담을 통하여 인식하게 된 사과의 방법, ‘과거(구체적으로 한 일) + 현재(심정) + 미래(책임)’을 적용해서 그동안의 일을 아내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후 부부간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상담 초기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언성이 높아졌지만 점차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였다. 다만 술과 관련하여서는 단주는 하지 못하고 절주하며, 우울증 약은 매일 복용하고 있다. 본 사건의 발생 이전에는 아내의 이혼 요구가 한 요인으로 자리하였는데, 아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행위자는 아들의 사고와 이후 돌봄을 같이 하는 아내와 피해자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대신에 화를 분출하는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가족갈등을 키워왔던 과거를 반성하였다. 또한 회사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좋은 사람으로 행동했는데 가정에서는 아내, 자식은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잘못 살아왔음을 반성하였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폭력사실을 사과하였고 상담기간 중 폭력도 재발되지 않았지만, 완전하게 변화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행위자가 술을 마시고 대화를 요구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에는 아예 집에서 말을 하지 않는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변화를

기대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행위자의 노력 의지와 태도를 수용하고 지지해줄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행위자에게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1*** 상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3회,
교육강좌 3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1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회, 부부집단상담 8회 등 총 25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2. 8. ~ 2018. 5. 28.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2003년 중국에서 결혼하여 부부사이
에 1녀(15세)가 있다. 부부는 2006년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딸의 첫 생일 무렵 행위
자의 폭행으로 이가 부러진 후 반복적으로 행위자의 폭력
을 경험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에 행위자에게 이혼을 요
구하였다가 행위자의 사과를 받아들여 화해한 사실이 있으
며, 2017년에 행위자의 폭력이 재발되었다. 그리고 2017.
9. 사건 당일, 행위자는 산재치료 후 퇴원하는 버스 안에서
자신과 같이 앉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를 주먹으
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밀치며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가
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보호관찰과 본소에
의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초상담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위자는 본 사건
과 관련하여 접근금지 1달을 결정 받은 이후 집을 나와 지
내고 있었으며, 자녀가 피해자에게 이혼을 권하여 이혼결
심을 굳힌 피해자가 이혼을 제의, 협의이혼신청을 하여 협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13

의이혼의사확인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별거 중에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8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자녀를 면접교섭하고 있었던 점이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가부장적 사고와 태도, 분노조절 장애 등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으며,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주장만 하는 것을 갈등 원인으로 꼽았다. 부부의 이혼의사는 확고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좋은 부녀관계가 유지되기를 희망하여 행위자와 함께 부부집단상담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행위자도 자녀에 대한 아버지 역할 내지 책임감이 강하였다. 이러한 강점들이 결국 부부를 재결합하게 하였고, 혼인신고도 다시 하였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부부집단상담에 참여하였다.

부부집단상담을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자 화를 내는 빈도가 자연스레 줄어들었고, 특히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불평만 했던 자신이 더 많이 변한 것 같다고 말하며 행위자도 역시 인정과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예전에는 칭찬이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하지 못했으나 상담 후에는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변화에 대응하여 행위자도 좋아지고 있으며 행위자가 출근할 때 스킨십을 하는 등 부부 사이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 역시 피해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으며 자신은 성질이 급해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으나 이제는 참으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부부 싸움은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깨달았으며, 그동안 서로 강한 척하며 완벽주의자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였다. 상담종결 시 부부관계에 대하여 행위자는 10점 만점에 9점으로, 피해자는 7점으로 평가하였는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한 향후 노력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상담소가 무료결혼식 사업계획에 착수하면서 우선 논의한 사항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였고,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무료결혼식장 사용규약’을 마련했다.

“결혼식장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약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주 토요일에 한해 결혼식장을 사용하게 해 주고 결혼식을 올리는 데 모든 편의를 도모해 주어 합법적이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자격은 1) 결혼식장을 빌릴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이 약한 사람 2) 신랑, 신부, 하객 모두 합해 20명 이내의 간소한 결혼식을 올릴 사람 3) 낱짜를 받는 등 미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으로서 토요일에 식을 올리고 합동결혼식을 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청절차는 1) 결혼식 날짜 2주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2) 1개월 이내에 댄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과 인우보증서 2통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위의 절차를 밟은 후 신랑, 신부는 본 상담소의 결혼준비를 위한 교육을 받고 소장과 직접 면담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무료결혼식장 규약〉을 만든 상담소는 이러한 제도를 전단과 마스크를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결혼식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의 평화를 위한 예방사업 무료결혼식 (2)

1977년 10월 무료결혼식 시작

필요한 최대한의 준비에 들어갔다. 우선 주례자와 피아노 반주자를 주선하고 신부드레스, 예식용 카펫, 촛대 등을 마련해야 했다. 이러한 준비에 바쁜 가운데 무료결혼식 첫 신청이 들어왔다. 동거 7년에 두 아들까지 두었다는 27세의 신부 최씨와 28세의 신랑 성씨. 라디오를 통해 상담소의 무료결혼식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는 이들 부부는 언젠가 돈을 벌면 번듯하게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을 올리자며 동거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입에 풀칠하기 바빠’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들의 취학 때문에 작년에 혼인신고만은 마쳤다고 했다.

이들의 결혼식은 1977년 10월 22일 오후 2시 당시 상담소가 있던 여성백인회관 6층 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이 첫 무료결혼식의 주례는 이 소장의 부군이자 목사이며 8선 국회의원인 정일형 박사였다.

당초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무료결혼식이었으나 첫 예식을 치르고 보니 의외로 그 의미가 컸다. 그

것은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의식이며 또한 쉽게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에게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그리고 의지와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는 인생 출발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무료결혼식을 올리는 이들의 사연은 모두 눈물겨웠고 하객도 거의 없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토요일 일과를 끝낸 직원들이 자리를 메우기도 했다. 무료결혼식은 이처럼 다양한 방면에서 자원봉사를 이끌어내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번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Q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자 친구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많이 놀랐지만 일단 산모의 출산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아이를 저희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하려고 하였는데, 주민센터에서는 이러한 출생신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아들과 여자친구, 여자친구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아이를 저희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손자를 저희 부부의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을까요?

A

법원은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가족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고, 친양자 입양의 동기가 사건본인의 복리보다는 생모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 양육상황·친양자 입양의 동기·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0. 9. 16.자 2010브21 결정 참조). 또한 조부모가 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심판을 구한 사안에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자신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진실을 어떠한 경위에서라도 알게 되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될 우려가 높고, 당장은 아이가 조부모를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더

라도 조부모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이의 진정한 복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고, 조부모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양육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조부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 4. 24.자 2017느단1124 심판 참조).

위와 같은 하급심 판례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조부모가 손자녀를 친양자 입양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민선 변호사

새로 들어온 책과 상담소 자료집 2018.6~2019.4

책

여자의 독서
지능의 본질과 구현
언론과 공인
지적인 낙관주의자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다
행복의 형이상학
논어의 지평
첫째 딸로 태어나고 싶지는 않았지만
수용소

고양이는 내게 나답게 살라고 말했다
나의 성소 싱크대 앞
예수와 목자
상징의 기원을 탐구하는 매혹적인 여정
세상의 시작, 118개의 원소 이야기
빅 히스토리

숨은 생각한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시험형인간: 성균관대학교 박물관 제37회 기획전
변방의 사운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역사는 왜 가르쳐야 하는가
한국여성독립운동가
여성, 종교개혁과 통하다
플루언트 포에버
개인주의자 선언

브랜드 인문학
레버리지
페미니스트 99
정치의 발견
2019년 소법전

선진국의 탄생
한권으로 정리하는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분석
메모의 재발견
빅데이터 활용과 광고 사례 기반의 소비자 행동론

한국의 세대 연대기
세월호가 묻고 사회과학이 답하다
아비뇽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엄마는 페미니스트
모성과 모성 경험에 관하여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학방법론
한국의 헌법개정
헌법재판소 30년사
헌법재판소판례집 제30권1집(하)(2018)

듀이와 인문학 교육
인간성 수업
시민교육이 희망이다
당신 생각하느라 꽃을 피웠을 뿐이에요
파과

바깥은 여름
유리문 안에서
우로보로스
그 여름
나의 딸의 딸

김진애 | 다산북스 | 2017
이재현 | 로드북 | 2018
이재진 | 한양대학교출판부 | 2018
엔스 바이드너 | 다산북스 | 2018
문명식 | 생각과느낌 | 2017
알랭 바디우 | 민음사 | 2016
신창호 | 우물이 있는 집 | 2018
리세터 스하위테마커르 | 갈매나무 | 2018
어빙 고프먼 | 문학과지성사 | 2018
시라토리 하루히코 | 한국경제신문 | 2018

정신실 | 조아북스 | 2016
문익환 외 | 바이북스 | 2016
조지프 마주르 | 인터파크 | 2017
석원경 | 생각의힘 | 2017
이언 크로프턴, 제러미 블랙 | 생각정거장 | 2017
에두아르도 콘 | 사월의책 | 2018

애나 메리 로버트슨 모리스 | 수오서재 | 2017
성균관대학교박물관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 2018
신현준, 이기웅 | 채륜 | 2017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 문학동네 | 2015
키스 바튼, 린다 렉스틱 | 역사비평사 | 2017

3·1 여성동지회 | 국학자료원 | 2018
박호근 |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8
게이브리엘 와이어 | 민음사 | 2017
문유석 | 문학동네 | 2015
김동훈 | 민음사 | 2018

롭 무어 | 다산3.0 | 2017
줄리아 피어몬트 | 민음사 | 2017
박상훈 | 후마니타스 | 2015
현암사법전팀 | 현암사 | 2019
김종태 | 돌베개 | 2018

최진기 | 이지퍼블리싱 | 2018
김승민 외 | 한경사 | 2018
사이토 다카시 | 비즈니스북스 | 2017
고민정, 김용진 | 생능 | 2017
최선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18

이재열 외 | 오름 | 2017
정향균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7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 민음사 | 2017
한지희 | 소명출판 | 2017
김현철 외 | 법무부 | 2017

이계일 | 세창출판사 | 2017
박재창 외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 2018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18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 2018
폴 페어필드 | 씨아이알 | 2018

마사 C. 누스바움 | 문학동네 | 2018
장은주 | 피어나 | 2017
나태주 | 대원씨아이 | 2018
구병모 | 위즈덤하우스 | 2018
김애란 | 문학동네 | 2017

나쓰메 소세키 | 민음사 | 2016
임성순 | 민음사 | 2018
최은영 | 아시아 | 2017
최인호 | 여백 | 2014

보노보노처럼 살다니 다행이야
당신의 진짜 인생은

Why

상속자들

추남, 미녀

소설의 본질

반계유고

달의 뒷면을 보다

제12회 김유정문학상 수상작 작품집

제10회 현진건 문학상 수상작품집

국화 밑에서

단 하나의 문장

경애의 마음

리심 1,2

내게 무해한 사람

울지 않겠다고 결심한 날

때때로 괜찮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

여자 없는 남자들

빅매직

맨얼굴의 사랑

결혼이라는 소설 1,2

꾸밈없는 인생의 그림

비젯덩어리

지하철에서 책 읽는 여자

그리스인 조르바

계으른 자를 위한 변명

20세기 기술의 문화사

2018 양형기준

민사소송법

재혼가족 부부의 재산상 평등권 제고 방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NGO 현황분석 및 활성화 지원방안

가사노동시간 측정 및 행동평가 기준의 젠더불평등성 개선방안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 지원방안

여성가족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한 정책 개선과 발굴(II)

2018년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IV)

한국사회의 젠더와 건강 불평등 연구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IV)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IV)

다문화가족 내 성 불평등 실태와 정책방향

성폭력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증인신문 재판참고사항에 관한 연구

변호인 조력의 헌법적 보장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헌법적 검토

프랑스에서의 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엄마랑 나랑

엄마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김신희 | 다산복스 | 2017

오시마 마스미 | 무소의뿔 | 2017

버지니아 울프 | 이소노미야 | 2018

윌리엄 골딩 | 민음사 | 2017

아멜리 노통브 | 열린책들 | 2018

조남현 | 서정시학 | 2018

유형원 | 창비 | 2017

고두현 | 민음사 | 2014

한강 외 | 은행나무 | 2018

김가경 외 | 화니콤 | 2018

최일남 | 문학과지성사 | 2017

구병모 | 문학동네 | 2018

김금희 | 창비 | 2018

김탁환 | 민음사 | 2017

최은영 | 문학동네 | 2018

최은경 | 책앤 | 2018

여행자may | 더시드컴퍼니 | 2018

무라카미 하루키 | 문학동네 | 2014

엘리자베스 길버트 | 민음사 | 2018

정아은 | 민음사 | 2017

제프리 유제니디스 | 민음사 | 2017

페터 알텐베르크 | 민음사 | 2018

기 드 모파상 | 리수 | 2017

크리스틴 페레플리리 | 현대문학 | 2018

니코스 카잔차키스 | 더글래스 | 2018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 민음사 | 2016

김명진 | 궁리 | 2018

양형위원회 | 양형위원회 | 2018

강현중 | 박영사 | 2018

이미정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김복태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김영란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이미정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문유경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7

홍지현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김경희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김동식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장윤선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이택면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김이선 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8

사법정책연구원 | 사법정책연구원 | 2016

강신일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김종현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전영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2018

김세실 | 한국빼아제 | 2014

성민선 | 성연 | 2015

상담소 자료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 사이, 가정폭력상담의 효과와 지향점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2017년도 상담통계

2019 교원직무연수자료

알아 두어야 할 가족관계등록법

동지교실 VI :행복한 삶을 위한 비폭력 대화

제46회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제47회 나, 너 그리고 우리 행복찾기 부부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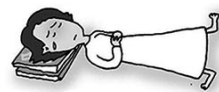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2019 등

최정아 사서

결혼과 인생(195)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7



글 | 그림 | 장차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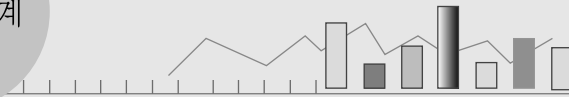
봄 햇살



이젠 조금씩 뒷걸음질 치며
달려가며 사느라 놓쳐버린 삶의 기억을 되찾아 준다.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본소,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에 관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본소는 5월 22일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다루어질 2016므○○○○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에 관하여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종래 대법원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동거의 결여’만을 친생추정의 예외로 인정하였는데, 공개변론에서는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에 따른 출산이었음이 확인되거나 아버지와 자녀의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으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 등에 있어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등에 관해 다룰 예정이다.

본소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친자관계의 확인이 용이해졌고, 성과 혼인 및 이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으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고 친생추정조항의 엄격한 적용으로 법률상 부나 생부, 생모, 자녀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친생추정의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범위를 넓혀야 하는 한편 그 기준은 자녀복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출장법교육’ 실시

상담소에서는 법의 생활화 운동의 하나로 지난 4월 5일

부터 11일까지 여의도에서 열린 봄꽃축제 기간 중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법률상식 퀴즈 풀기 및 가족법 개정을 위한 서명 받기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상담소의 다양한 사업을 안내하였다. 시민들은 간단한 법 상식 퀴즈를 풀면서 어려운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었다며 즐거워하였고, 상담소에서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행사에는 상담소 직원 15명과 자원봉사자 4명, 그리고 1,633여명의 시민이 함께 하였다. (관련 사진 2면)

직원 재교육 실시

- ‘국제가족관계 등록 실무’를 주제로

4월 22일 본소 대강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의 직원 재교육이 열렸다. 본소는 직원들의 전문적 역량을 확대하고, 상담자로서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한 편 문화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학은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정기적으로 직원 재교육을 가져 왔다.

이번 직원 재교육은 ‘국제가족관계등록 실무’를 주제로 서장웅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의 강의와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국제 교류가 활발해 지고 다문화 가정의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신분관계로 인한 가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상담소를 찾는 이들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

들을 위한 법률구조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의는 국제사법, 국제출생신고, 국제혼인신고, 국제이혼신고, 국제입양신고 및 최신 가족관계등록예규와 국가별 혼인, 이혼, 입양제도 등의 내용으로 폭 넓게 이루어졌다. (관련 사진 2면)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4월 25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강의주제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였다. 강사는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한 사회적 동물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인간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늘 행복한 감정만 느낄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상호관계 속에서 충돌이 생겨나는데, 이를 관계의 단절을 통해 원초적으로 제거하려 하기 보다는, 이 충돌을 타인에 대한 이해로 승화시키고 더 돈독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강사가 실제 부부 갈등의 예를 설명해주어 이해가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5월 23일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 4.3.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복미영 상담위원
- 4.4. 청소년대상 가정폭력 예방 법교육
- 차연실 상담위원
- 4.17. 순회상담 - 과천여성비전센터
- 김진영 상담위원
- 4.24. 강서지역자활센터 - 가족법 및 신용회복 교육
- 조은경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4월 1일 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자녀 양육비 이행을 위한 파탄주의 이혼법 도입 연구자문회의, 8일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한 ‘비혼가족 차별개선 관련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였다.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을 하였고, 25일에는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26일에는 가족법학회에 참석하였다. 30일에는 법무부가 주관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위촉식 및 제1회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4월 5일 본소를 방문한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무성 경위, 이영림 경장을 맞이하여 가정폭력사건 처리와 관련한 업무 협력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본소의 가정폭력 관련 프로그램 및

소송구조 사업을 설명하고 기존의 경찰연계사안 처리 결과를 공유하였다. 이 자리에는 차연실 상담위원이 함께 하였다.

26일에는 한국가족법학회·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하였으며, 29일에는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협의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하였다.

곽배희 소장, 법의 날 기념식 참석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4월 5일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한 업무 협력 차 본소를 방문한 서울마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전무성 경위, 이영림 경장과 환담하였고, 25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2019년 4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495				
법률상담 (5,95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1,178	4,567	183	24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408		89	45	

2019년 4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495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953건(91.6%), 화해조정 40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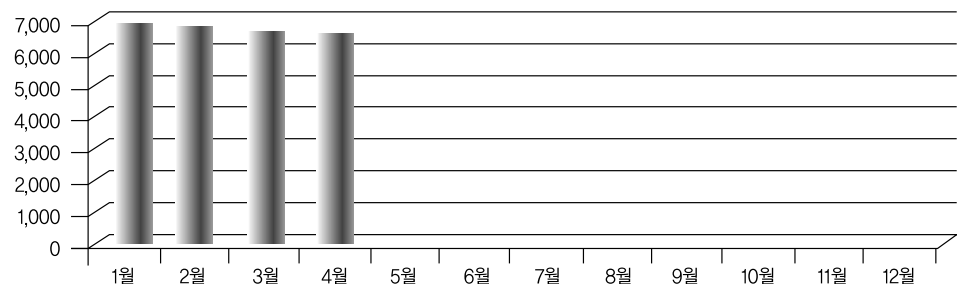
(6.3%), 소장 등 서류작성 89건(1.4%), 소송구조 45건(0.7%)이었다.

법률상담 5,95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3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3.9%→4.0%), 양육비(9.0%→9.2%), 면접교섭권(2.6%→3.2%), 인지(1.7%→2.0%), 친생부인(1.2%→1.7%), 친생자존부(2.7%→2.9%), 입양(1.7%→1.9%), 파혼(0.3%→0.7%), 혼인무효·취소(0.7%→1.2%), 이혼무효·취소(0.3%→0.4%), 부양(1.8%→

1.9%), 유언·상속(6.7%→7.0%), 친양자(0.6%→1.2%), 개명(0.4%→0.7%), 과양(0.2%→0.3%), 가사절차(5.5%→5.8%)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절차(0.1%→0.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95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178건(19.8%), 전화상담 4,567건(76.7%), 인터넷상담 183건(3.1%), 순회 24건(0.4%), 지상 1건(0.0%)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 ● ● 고 맵 습 니 다

2019년 4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문은희, 박선화, 유문숙, 이병주, 홍진범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소영, 강운영, 강종협,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안서연, 오현희, 윤원섭, 이혜민, 이효재, 조진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진아, 김미옥,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김재희, 류현정, 심미숙, 이승주, 천정환,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데이비드 워터스, 사대진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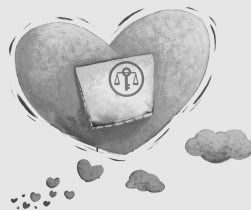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경은, 고원지, 김정민(1), 김정민(2), 김동은, 김세현, 김소희, 김송희, 김수연, 김준성, 김지우, 김채린, 김하영, 김혜원, 노규림, 문채현, 박범근, 박소언, 박지원, 박채니, 배상준, 백지연, 손준호, 심수민, 엄윤서, 오정훈, 윤도경, 이승철, 이원정, 이은현, 정윤정, 조태현, 진수연, 최유림, 최유진, 최희원, 황인경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천정환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상담은 이렇게 ...

전화, 인터넷, 서신 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열려 있으나, 문제의 특성상 되도록이면 상담자와 직접 면접상담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면접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접수 오후 7시까지)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접수 오후 7시까지)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5시
- * 사전 예약 필수

서울가정법원 출장상담

- 평일 : 오전 10시 ~ 오후 5시

인터넷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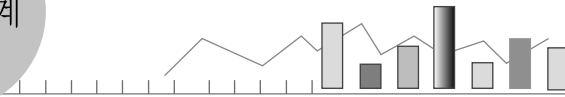
- <http://www.lawhome.or.kr>

회원이 되시려면 ~ ~ ~ ~ ~

- 일반회원 : 연회비 5만원
- 평생회원 : 50만원
- 가정상담 후원회원 : 연 1만원
- 자원봉사회원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4월 2일 조영삼, 이현석, 심지현, 심재범 변호사와 오경식 소장 및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구조변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9일, 12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가사조정, 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7회, 형사조정 10회를 실시하였다. 이경숙, 정수경, 정이수, 김효경, 장경아, 황은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7회, 광주시법원 2회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에서 상담 4회, 내소 상담 2회를 실시하였다. 낙원새마을금고와 법률구조관련 MOU를 체결하였다.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임상준, 임재훈, 장수혁, 정수경, 한승일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4월 24일 연수구청에서 연수구청, 연수경찰서 등과 3자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수원지부

4월 8일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초대회장으로 박운선 소장이 선출되었다. 9일 수원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설립에 따라 사법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박지현, 차명심, 위철환, 문나연, 한승일, 허정택, 이운선, 최효재, 최지희, 강은혜, 송지영, 박진우, 전성철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5회를 실시하였다. 4월 2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전주지부

4월 2일, 16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 4회, 협의이혼상담 3회를 실시하였다. 강영신, 김영, 박형운, 이연주, 이진, 이한명, 진휘원, 한지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4월 22일 상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사례 외부 슈퍼비전을 실시하였다. 이재경, 김창건, 박진석, 박은정, 이동건, 홍지혜, 김형석, 김영옥, 백준익, 이수희,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4월 15일 운영이사 야유회를 실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운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4월 5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 사례연구회의에 참석하였다. 11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18일 창원지방법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백경석, 민태식, 박인욱, 이창희, 이재영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3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4월 1일 2019년 충북여성 인턴 발대식에 참석하였다.

2019년 3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릉 (033) 652-9555	99	88	6	1	4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06	59	241	1	5
군산 (063) 442-1560	213	175	33	2	3
대구 (053) 745-4501	1,250	1,057	186		7
대전 (042) 520-5258	187	187			
동해 (033) 535-0188	119	119			
목포 (061) 273-2514	153	152	1		
부천 (032) 667-2314	432	219	213		
성남 (031) 707-6661	444	337	99	5	3
송도 (032) 834-1369	164	48	101	6	9
수원 (031) 243-4600	311	277	34		
순천 (061) 753-9910	202	192	8		2
안동 (054) 856-4200	108	89	18		1
울산 (052) 246-9568	154	136	7	1	10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산 (063) 851-5113	367	365			2
인천 (032) 865-1120	338	149	166	1	22
전주 (063) 244-2930	295	274	13	3	5
정읍 (063) 535-3705	123	122		1	
제천 (043) 644-5690	122	116			6
충구 (02) 2238-6554	312	311			1
진주 (055) 746-7975	154	111	37		6
창원·마산 (055) 261-0280	300	278	18	2	2
청주 (043) 257-0088	174	127	37	10	
춘천 (033) 257-4688	112	112			
태백 (033) 554-4004	70	70			
평택·안성 (031) 611-4251	138	103	30	4	1
포항 (054) 283-7555	74	74			
지부총상담	6,721	5,347	1,248	37	89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모에 대한 급여채권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8-475

담당 : 조은희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남, 35세)와 채무자(여, 34세)는 2016년 3월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면서 사건본인들(남 13세, 여 8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판결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4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 50만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9년 9월까지 월 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2016년 8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총 200만 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이 또한 채무자는 이행하지 않았다. 채권자는 이혼 후 현재까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채권자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추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8.)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에 무관심한 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8-131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남, 38세)과 피신청인(여, 33세)은 2012년 1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5세)을 두었으나, 2016년 1월경 재판상 이혼하였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5년 12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를 바꾸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신청인은 현재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며, 인공어깨를 삽입하여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거동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피신청인은 회사에 근무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1.)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드단0000 이혼 등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6,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명령의 고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0개월 동안 매월 말일에 600,000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269

담당 : 주소희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39세)은 소각장에서 기계유지 및 운영을 하여 모은 자금으로 지인과 함께 상품중개 및 영업컨설팅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경험미숙으로 자산을 모두 탕진해버렸다. 이후 신청인은 기술보증기금에서 1억 원의 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공장을 임차한 후 제조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큰 어려움 없이 원만하게 운영하였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어 거래처가 하나도 남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신청인은 장기간 임대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증금을 모두 차감당한 채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양 손목의 관절통증(지체장애 6급)이 심해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었다. 결국 간헐적 일용근로에 의존하며 생활하던 중에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3.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온 후 40년간 홀로 지낸 아내의 이혼 청구

법률구조 2018-147

담당 : 정진경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77세)와 피고(남, 78세)는 1966년 혼인신

고를 하였다. 원고는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모와 갈등을 빚다가 1969년경 시모의 강요로 피고와 이혼하였다. 1978년경 원고는 직업도 없이 술에 빠져 망가진 피고와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헌신적으로 피고를 보살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분식집, 봉제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피고는 점점 더 폐인이 되어 원고를 폭행하고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어 1981년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홀로 생활하였다.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가 두려워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걸림돌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두 번의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276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8세)은 1999년경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주차장과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폐업을 해야만 하였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자석요를 판매하는 다단계사업을 시작하였고 사업 초기에는 월 약 400만원의 매출을 올려서 꾸준히 채무상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석요에 대한 건강문제제기 및 불량제품으로 인해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다. 두 번의 사업실패로 인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신청인은 2011년경 이혼 후 단순노무를 하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사실상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

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3.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무연고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육해온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8-281

담당 : 이상현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남, 8세)은 무연고 아동으로 아동 복지 시설에서 생활하였다. 2013년 9월경 위탁모(여, 46세)는 영아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사건본인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사건본인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14년 11월경 사건본인이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탁모는 가정 위탁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되었다. 위탁모는 사건본인에게 안정된 가정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하였고, 사건본인 또한 위탁가정에서 계속 양육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시설 퇴소로 법정 후견이 종결되어 사건본인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위탁모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8.)

1.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정△△를 선임한다.
2.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위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2019. 5.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상속재산 포함, 기준일 : 2019. 1. 31.)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20. 2. 29.부터 2029. 2. 28.까지 매년 2월 말일에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 매년 1.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관수술 사실을 속이고 혼인한 남편과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18-397

담당 : 김세중 변호사

사건명 : 혼인 취소 등

내용 : 원고(여, 38세)와 피고(남, 38세)는 2017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혼인 초부터 원고와 피고는 시모와의 갈등으로 자주 부부싸움을 했다. 2018년 6월경 피고가 원고의 양팔을 양 무릎으로 누른 후, 원고의 얼굴을 계속하여 폭행한 일이 있었다. 원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사건으로 피고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2018년 7월경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 정관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혼인 전 피고에게 자녀를 출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었고, 피고 또한 자녀를 원한다고 하였다. 혼인한 후 10개월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아 수술 여부를 묻자, 피고는 그제야 정관 수술 사실을 밝혔다. 원고는 큰 충격에 피고에게 이를 따졌지만,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화를 냈다. 원고는 피고가 정관수술을 하여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원고를 기망하여 혼인에 이르게 한 피고와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을 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8. 12. 6.)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18-418

담당 : 김한주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5세)은 상대방(남, 44세)과 1996년 2

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남, 22세), 사건본인2(남, 20세), 사건본인3(여, 15세)을 두었다. 그러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게임중독 문제로 2007년 4월경 협의 이혼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건본인들을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 위해 저녁 9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해왔고, 사건본인들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손을 많이 쓰는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양손을 수술하여 현재 손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3(여, 15세)이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를 원하지만,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꿈을 뒷받침 해줄 능력이 없어 고민이 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골프도 치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와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3에 대한 장래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2. 1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사건본인3의 장래양육비로 2019. 2.부터 2022. 6.까지 월 5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로 7,5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96회로 분할하여 2019. 2.부터 2022. 6.까지는 월 50만 원, 2022. 7.부터 2027. 1.까지는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실패 및 보증 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93

담당 : 박은정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1세)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생활비 및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

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던 중 지인이 찾아와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인이 되어 주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 신청인으로서 별 의심 없이 보증을 서주었는데, 대출을 받은 지인이 바로 다음 날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다. 이로 인해 보증채무까지 떠안게 된 신청인은 형편이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2006년경 정육점을 폐업하게 되었다. 이후 이렇다 할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골화증’이라는 질병까지 앓으면서 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경제적인 갈등으로 배우자와 별거 중에 있으며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청인은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3. 19.)

채무자를 면책한다.

상대방이 자녀의 면접교섭 불이행을 문제 삼아 이행명령 신청을 하자 이를 기각시키고, 미지급양육비를 이행하도록 결정



법률구조 2018-144, 145

담당 : 이영임 변호사

사건명 : 면접교섭 이행명령 응소/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피신청인(여, 40세)과 신청인(남, 52세)은 2012년 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7세)을 두었다. 결혼 생활 내내 신청인은 심각한 폭행, 성폭행, 폭언 등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신청인과 사건본인을 괴롭혔다. 견디다 못한 피신청인은 결국 2016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30만원을 지급할 것과 신청인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하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이루어졌다. 현재 피신청인과 사건본인은 자활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 사건본인은 이혼과정의 상처로 인하여 ADHD를 진단받고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본인이 신청인을 만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여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피신청인은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폭력을 이유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응소하고, 오히려 그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2. 19.)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과 : 결정(서울가정법원 2019. 2. 19.)

1. 피신청인(면접교섭 신청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드단000 이혼 등 청구사건의 2017. 2. 1.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써, 신청인(면접교섭 피신청인)에게 2019. 1.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600만원을 지급하되, 2019. 3.부터 2019. 8.까지 6회에 걸쳐 월 1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던 부에 대해 과거 및 장래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8-403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44세)은 상대방(남, 47세)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12세)을 두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5년 7월경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양육비 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노상에서 물건을 파는 등의 곳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방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사건본인의 양육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다. 현재 사건본인

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등록금, 학원비 등이 정기적으로 지출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수원지방법원 2019. 1. 7.)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가.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을 2021. 2. 28.까지 지급한다. 만일 청구인이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장래양육비로 2019. 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 지급은행 : △△은행 사건본인(1234-567-8910)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심판비용 및 보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녀를 유기하고 연락 두절된
친모의 친권 일부를 상실시키고
위탁모인 외조모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8-353

담당 : 조진형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선고등

내용 : 청구인(여, 45세)은 사건본인(남, 7세)의 외조모이고, 상대방(여, 26세)은 청구인의 딸이자 사건본인의 친모이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임신했을 때 사건본인을 입양보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건본인 출산 후 생각이 바뀌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였고,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거쳐까지 마련해 주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홀로 집에 유기한 채 집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갔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꿔 연락이 두절되었다. 청구인은 그날로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사건본인의 위탁모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보니 사건

본인의 용돈을 저축해 주기 위해 통장을 만드는 일조차 할 수 없었다. 친권자인 상대방이 연락 두절되어 협조를 받을 수 없기에 향후 사건본인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 4. 3.)

1.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고,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징계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과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에 관하여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자녀들을 유기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판결

법률구조 2018-237

담당 : 장철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등

내용 : 원고(여, 46세)와 피고(남, 49세)는 199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5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막내아들 출산 후, 피고에게 카지노 도박으로 인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한 갈등을 겪다가 2005년경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도박을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돌보는 데에도 소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9. 1. 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8. 12. 20.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7. 제2,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다음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장철진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소송구조에 참여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소회를 간단히 적어봅니다. 원고의 남편은 해외원정 도박 때문에 가정불화를 만들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필리핀에 머물면서 연락이 되지 않은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법원에 출입국 사실증명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이 필리핀에 불법체류증임을 밝혀서 공식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상해서 원고에게는 미리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려드렸고, 중간에도 전화나 문자를 드려 안심시켜드렸습니다. 변호사로서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인데 막상 소회까지 적으려 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실패로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게 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409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40세)은 대학 졸업 후 리조트회사에서 사무직원으로 일하였다. 그러던 중 회원권판매 영업을 해 보라는 상사의 권유로 프리랜서의 길을 걷게 되었다. 영업 초기에는 실적이 좋아 일반 사무직원의 2~3배에 달하는 월급을 받았고 씀씀이가 커졌다. 하지만 콘도회원권과 골프회원권이 대중화되면서 경쟁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신청인은 영업부진에 시달리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최소한의 고정비용인 우편발송요금, 인터넷광고비용, 신문광고비용조차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연거푸 계약에 실패하면서 빚만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소유하던 자동차도 팔아 영업자금과 생활비로 사용해야만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과호흡증후군 및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다. 건강악화로 현재까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신청인은 9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9. 4. 1.)

채무자를 면책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5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5월 27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5월 23일(목)	5.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
6월 27일(목)	6.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5월 9일	출가분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연구소 소장)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김희진 (영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분한 삶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2 0 1 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1)

가정폭력피해자의 대응방식 변화와 법제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 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후 2시.
- 장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강당

● 좌장 : 객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상담프로그램 소개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사례발표

주제 발표

- 1) 장희숙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발표

-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전문연구원
유향순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이민수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현원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